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
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7일
신고인	회사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		전자우편		
	주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		
제 조 업 자	회사명(국가)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		전자우편		
	주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		
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	제 조 자 명		제 품 명		
	기본 모델명		정 격		
	파생 모델명(필요시 별지사용)		적용안전기준		
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	미보유()		* 미보유 시 공급자적합성확인·신고 필요		
	보유(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(생활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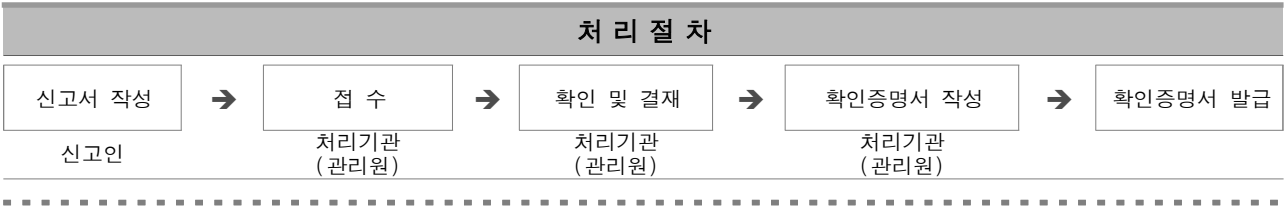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.

신 고 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(첨부서류는 제외함)	수수료
	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※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

발급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직인